



교섭속보

10호

2023년 7월 4일 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송은옥

파업 찬성률 90.5% 파업의 급행열차 예열 완료! 이제는 승리만 남았다!

재적인원	투표자수	투표율	찬성	찬성률	반대	반대율
4,263명	3,617명	84.8%	3,273표	90.5%	344표	9.5%

투표율 84.8%, 파업찬성률 90.5%

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총 조합원 4,263명 중 3,61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파업찬성률은 90.5%로 기록됐다. 이로써 직원 가치를 찾아가기 위한 준비는 끝났다.

환자이송 요청 공문 발송

필수유지업무 근무표 작성으로 파업 준비 착착.

환자와 직원 모두에게 행복한 병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지부는 환자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환자를 두고 떠나올 수 없는 조합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미 6월 29일경 의료원과 3개 병원에 [파업돌입에 따른 환자 이송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최소한의 인력을 남겨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수유지인력을 남기고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의료 대란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원이 노동조합이 보낸 공문에 따라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7월 5일, 7월 11일 2차례 예정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대표가 참가하여 교섭이 결렬된 경위 및 요구안에 따른 내용들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1차 조정회의는 21년 진행된 바에 따르면 노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안과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의료원이 전향적 태도와 긍정적 결단을 선택한다면

자율타결의 마지막 희망은 있다.

21년의 파업이 재연될지 22년의 영광이 재연될지

의료원의 결단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전 조합원 출근 선전전

7월 10일(월)~ 7월 12일(수) 3일간

장소 및 시간 : 각 병원 로비 / 오전 7시 30분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고대의료원지부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136-075) | 전화 (02) 920-5159 | 전송 (02) 923-0487 | ID:KJMLLU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번지 (152-703) | 전화 (02) 2626-1915 | 전송 (02) 2626-191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6번지 (420-020) | 전화 (031) 412-5353 | 전송 (031) 412-5354

문서번호 의노 제2023-56호
시행일자 2023. 6. 29
수신 안암병원장
참조 경영관리실장
제목 파업 돌입에 따른 환자이송 요청 건

1.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귀 안암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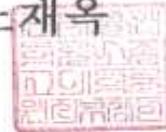
2. 우리노조는 고대의료원과 2023년 산별현장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원만히 타결되지 못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쟁의행위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조정에서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우리노조로서는 적법하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바, 귀 안암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입·퇴원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시 환자 이송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귀 병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우리 노조는 2023년 산별현장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대의료원지부 지부장 노재욱



중간관리자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운영

노동조합이 진행하는 파업은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입니다.

중간관리자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될 시 노동조합은 기관장 및 행위 당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전체 문자 및 카카오톡등의 SNS를 통해 파업에 대한 토론 및 이유를 요구하는 경우

▲파업을 나갈 경우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경우

▲개인 면담을 통해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

▲문자 및 공지사항으로 파업 참가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

--> 행위 당사자 즉, 중간관리자를 고발조치 시행